

“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
(경유)

참 조

제 목 ‘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’ 개정(안) 의견수렴



1. 환경부에서는 「건설폐기물법」 개정사항 및 그간의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반영코자 ‘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’ 개정(안)(세부내용 협회 홈페이지(www.koras.org) 참조)을 행정예고('22.6.2 ~ 6.20) 하였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불임의 주요 내용 및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6월 15일(수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	개정안	수정안	사유

불임 : ‘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(안)’ 주요 내용 1부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담당 김혜승 부장 강한서 본부장 이원표 사무총장 안연광 회장 박하준
 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 - 328 호 (2022.6.7) 접수
 우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뒀로 27길 2 일동제약빌딩 3층 / www.koras.org
 전화 02-3476-7787 전송 02-3476-8464 /koras05@naver.com / 공개

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(안) 주요 내용

□ **주요 내용** (세부내용 첨부 참조)

- 순환골재 재활용제품(콘크리트제품)의 정의 구체화(안 I -2관련)
 -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중 콘크리트제품을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% 이상 사용한 제품과 50%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으로 규정
- 건설폐기물 분류체계 개선(안 II - 1 관련)
 - 시멘트 포대를 폐합성수지에 포함하고, 폐유리섬유를 폐섬유에서 제외(폐유리섬유를 그 밖의 폐기물로 규정)

현 행				개 정 안			
분류	분류 번호	종 류	세 부 내 용	분류	분류 번호	종 류	세 부 내 용
가 연 성	40-02-07	폐합성 수지	○장판, 스티로폼, 비닐	가 연 성	40-02-07	폐합성 수지	○장판, 스티로폼, 비닐, <u>시멘트 포대 등</u>
	40-02-08	폐섬유	○보온덮개 등(단, 석면 함유물질 제외)		40-02-08	폐섬유	○보온덮개 등(단, 석면함유 물질 및 <u>불연성물질인 폐유리섬유 등은 제외</u>)
기 타	40-90-90	그 밖의 폐기물	○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타이어, 폐고무 등	기 타	40-90-90	그 밖의 폐기물	○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타이어, 폐고무, <u>폐유리섬유 등</u>

- 건설오니 분류에서 오염물질 제거 목적으로 발생한 오니류 제외

현 행				개 정 안			
분류	분류 번호	종 류	세 부 내 용	분류	분류 번호	종 류	세 부 내 용
불 연 성	40-03-10	건설 오니	○ <u>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(하수, 해저준설토)</u>	불 연 성	40-03-10	건설 오니	○ <u><삭제></u>

- 혼합건설폐기물의 이물질 혼입기준 명확화

현행				개정안			
분류	분류번호	종류	세부내용	분류	분류번호	종류	세부내용
가연성·불연성혼합	40-04-14	혼합건설폐기물	<p><신설></p> <p>① 불연성에 가연성이나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</p> <p>②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과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 '①' 의 경우 ></p> <p>건설폐기물 (95%) + 가연성폐기물 + 기타 (5%)</p> <p>< '②' 의 경우 ></p> <p>기타폐기물 (95%) + 가연성폐기물 (5%)</p> </div>	가연성·불연성혼합	40-04-14	혼합건설폐기물	<p>○ 영 별표 1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중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, 다음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.</p> <p>① 불연성에 가연성과 페보드류 및 페판넬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</p> <p>②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과 페보드류 및 페판넬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 '①' 의 사례 ></p> <p>건설폐기물 (95%) + 가연성폐기물 + 페보드류·페판넬 (5%)</p> <p>< '②' 의 사례 ></p> <p>페보드류·페판넬 (95%) + 가연성폐기물 (5%)</p> </div>

- 잔류콘크리트 등에 대한 처리책임 명확화(안 II-1 [해설] 관련)
 - 레미콘 타설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콘크리트, 시멘트 포대 등도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배출자(분리발주 대상 사업의 경우 발주자)에게 처리의무 부여
- 덧씌우기 된 페아스콘의 배출기준 명확화(안 II-1 [해설] 관련)
 - 분리 장비의 현장 출입이 불가능하여 분리·배출할 수 없거나,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절삭하여 분리한 후 콘크리트에 잔류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혼합된 상태로 배출 가능

- 폐유리섬유 등의 처리방법 규정(안 Ⅱ-1 [해설] 관련)
 - 폐유리섬유 및 암면 등은 현재 재활용 기반시설이 부족하며, 소각이 불가능하므로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매립하여 처리토록 규정
- 분별해체 관련 개정사항 반영(안 Ⅱ-3 관련)
 -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별해체 대상 공사 및 우선 제거 폐기물 등에 대한 기준 마련
- 폐아스콘 처리용역 관련 유권해석 사례 등 반영(안 Ⅲ-1 - 나 [해설] 관련)
 - 폐아스콘 처리용역 발주기관에 대하여 낙찰업체 선정 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및 생산·관리 여부 등을 확인*토록 준수사항 마련 (단, 덧씌우기 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 제외)
- * 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, 환경마크, GR인증 등 보유 여부 확인
- 순환골재 외부보관 관련 적극행정 심의결과 반영(안 Ⅳ-1 [해설] 관련)
 -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의 경우 바닥면, 벽면, 지붕 등을 갖춘 외부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
- 폐아스콘의 재활용 용도 명확화(안 Ⅴ-2 [해설] 관련)
 -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반드시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혼합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성토용·복토용, 표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

첨부 : 업무처리지침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(협회 홈페이지 참조) 1부. 끝.